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5. 10.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경과

의안 제612호로 2025년 10월 2일 김지연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장애인의 구립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간접 차별  
등의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사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에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 향상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10.2.~2025.10.15.)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장애인 우선 사용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발의됨.

### ○ 종합의견

- 우리 구(區)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의 경우 대부분 선착순 모집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 환경의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게 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sup>1)</sup>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sup>2)</sup>

#### 1) 제4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2)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 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에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규 회원 등록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접수 받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음.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sup>3)</sup> 장애인 우선 사용의 근거를 신설하며 실제 장애인의 이용 니즈(needs)가 높은 곳은 자치구 생활체육센터 이므로, 향후 자치구 조례에도 장애인 할당제 명문화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음.<sup>4)</sup>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이 일정 비율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4) 출처: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만 실제 장애인의 이용 니즈(needs)가 높은 곳은 자치 생활체육 센터인 바, 자치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자치구 조례에도 장애인 할당제를 명문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참 고 자 료

## 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 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